

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

(의안번호 제766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. 9. 13 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2. 9. 14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2. 10.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
-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
-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
- 기금결산보고서
-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보고서
-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보고서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2001년도 세입결산으로는 세입예산 현액은 2,123억694만4천원이었으며, 당초 계획보다 367억1,012만1천원이 늘어난 금액이었음.
-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,010억6,536만5천원이 수납되어졌고, 미징수로 출납결손액 2억 2,772만 2천원과 미수납이월액 21억8,729만2천원이었음.

- 특별회계로는 108억6,164만5천원이 징수되고 미징수금은 1억678만원이었음.
- 총 세출예산 현액은 2,123억694만4천원이며, 그중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 2,011억2,164만5천원 중 1,289억7,391만6천원이 지급되고 662억8,798만3천원은 이월, 나머지 58억5,974만6천원은 불용처리되어졌음.
-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1억8,529만9천원중 88억258만6천원이 지급되고 7억4,740만원은 이월되고 나머지 16억3,531만3천원은 불용처리 되어졌으나 결산은 회계연도 수입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 예산에 의하여 행동한 사후 재정보고로 의회의 사후 감독, 즉 승인을 받는 것으로서 예산집행의 적정여부와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시 예산편성에 감시를 한다는 입장에서 예산의 집행과정을 정확히 확인·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 시정시켜야 될 것으로 보다 세심한 심의가 요구되며,
-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 3명의 위원이 2002.5.13부터 6.1까지 20일간 결산검사한 결과를 최종 확인·검토하는 것으로서 결산검사가 잘 되었는지 여부와 결산서상에 나타난 순세계잉여금 발생과정, 채권소홀로 과다 결손처분 내용, 이월사업 및 불용액 과다발생 원인, 변상금·과태료의 징수부진 이유, 시책사업의 적정성, 효율성, 수지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 확인하고 증빙자료 대조 및 추진성과 등을 분석하여 익년도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에 가일층 분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2. 10. 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